

제정·개정·폐지 사유서

학교구치명	4단계 BK21심리학교육연구단 사업 관리 운영 지침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부개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개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지		
제정·개정·폐지일자	2023.02.01.자		
소관부서명	4단계 BK21심리학교육연구단	작성자	박진희
제정·개정·폐지 사유			
<p>1) 제13조 : 참여대학원생의 성실 의무는 이미 상위 규정인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, 해당 조항으로 같음하고자 한다. 또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진행되며 참여대학원생의 증가하는 해외 체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.</p> <p>2) 제18조 및 제21조 :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을 위해 성과 평가 시기를 사업종료 약1개월 전에서 사업 종료 전까지로 변경하여 당해 년도 사업 성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</p>			
주요 내용			
<p>1) 제13조 (기타) 개연구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체류 (해외여행, 휴가 등)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- 해당 조항 삭제</p> <p>2) 제18조 (성과급 지급 기준)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평가 하는 것에서 사업 종료 전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수정</p> <p>3) 제21조 (성과급 지급 기준)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평가 하는 것에서 사업 종료 전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 수정</p>			
의견 수렴			
위원회 심의	2023.1.2.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심의		
사전 토의			
사전에고제	해당 사항 없음		